

취업자 출석 인정 주요 이슈

2016. 9. 30.
창의인재육성처



1. 기본 원칙의 이해



● 원칙 및 방향

- 기존 관행적으로 해오던 비정상적, 부정적 활동을 탈피
- 정상적 활동 중심, 원칙 및 규범 준수

● 출석 인정에 관한 기본 원칙

-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 준수
- 교육 내실화, 정상화 기본 원칙 준수
 - 수업과 교육을 충실히 이행해서 전공분야 지식을 습득한 후 졸업
-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학사운영 원칙 준수
 - 예외 규정의 최소화
 - 엄격한 학사관리
- 일과 학습의 병행

2. 기본 구비 서류



- 근로계약서 사본
 - 회사명, 사업자 등록번호, 주소, 대표자 성명, 피고용자 성명, 피고용자 생년월일, 고용기간, 급여를 분명하게 명시
 - 표준근로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
- 건강보험가입확약서 또는 재직증명서
 - 취업통계의 근거
 - 건강보험가입확약서 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발급 가능
 - 재직증명서 :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직장을 배려한 조치
- 제출시점 : 2회
 - 근무 개시 시점, 학기말

3. 처리 프로세스



지도교수가 기본 서류를 받아 학부에 제출

- 취업현황 수시 파악, 학생지도 충실

학부장 기본 서류 검토 및 다코다스 입력

- 출석인정여부 판단 (불인정 범위 참조), 지도교수 다코다스 입력

취업학생이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기본 서류를 보여
주고 확인

- 기본 인성

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교무처 및 창의인재육성처에
자료제출

- 통계현황을 요청하는 외부기관 요청시

4. 성적처리



- 과목별 담당교수의 평가
 - 절대평가/상대평가 기준 준수
- 기본 준수사항
 - 중간고사, 기말고사, 레포트 등은 의무적으로 실행
- 근거자료 확실하게 보관
 -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처리를 입증할 자료 관리
 - 시험지, 레포트 등

5. 출석 불인정 범위



- 아르바이트
 - 아르바이트는 취업이 아님
 -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수업외 시간에 하고 학교생활에는 충실해야 함
 - 주요 관심 업체
 - 롯데리아, 맥도널드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3주 이상 연속근무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 주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 필요

- 국비 직업훈련 연수생
 - 재학생이면 출석을 기본으로 하면서 전공 교육 실행

- 마지막 학기 이전 취업한 학생
 - 기본적으로 학생은 직장보다는 학습이 우선

5. 출석 불인정 범위



- 프리랜서
 -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결석할 논리적 근거가 없음
 - 취업을 증빙할 서류가 없음

- 창업
 - 창업학기제로 대체 가능
 - 실제 창업을 했을 경우 첫 학기는 창업휴학을 권함
 - 창업을 했더라도 교육은 충실히 해야 함

6. 기타 점검사항



- 근로계약서
 - 최소임금수준의 급여 : 주 5일,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
 -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준수사항

- 가족회사
 - 가족회사 취업 불인정 여부는 학부장 판단 (지도교수와 협의)
 - 가족회사 여부를 판단할 공개 자료가 없음
 - 실제로 2세 경영수업과정으로 가족회사 취업한 경우도 있음
 - 학생지도과정에서 기본 양심에 근거해서 처리하도록 학생지도

- 중도퇴사
 - 근무기간만 인정

6. 기타 점검사항



- 학기말 서류 미제출자 처리
 - 서류 미제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말고사 전 분명하게 고지
 - 성적처리 마감전 학기말 제출서류를 받아야 함
 - 서류 미제출일 경우 지도교수의 판단에 의해 출석인정기간 산정
 - 대부분 퇴사일 경우가 높으므로 근무개시월 당월만 인정 등 지도교수 판단

- 편입학한 재직근로자
 - 전일제 수업에서 야간 수업이 가능하도록 수업시간표 편성
 - 주간 수업 수강 자제 : 교수, 학생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

- 장기적으로 졸업 후 취업을 권장
 - 취업환경변화에 따라 졸업생 대상 구인추세 확대

6. 기타 점검사항



- 현장 학습 및 연수
 - 취업이 아니므로 이번 학칙개정과는 관련없는 사안
 - 교무처와 별도 협의
- 취업인정에 관한 모호한 사항은 창의인재육성처로 문의